

# 「2022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의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12. 2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2022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안내

- ◆ 모집기간: '21. 12. 22(수) ~ '22. 1. 21.(금), 18:00까지
- ◆ 모집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 1. 목 적

- 국내 스포츠산업체 중 규모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국내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와 질 좋은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2. 모집개요

- 모집규모: 7개사 내외(2.8억원/년)
- 지원기간: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자격: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산술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최근년도'는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를 말함

###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자격 제외대상) -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당해연도(2022)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선도기업 도약전략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정적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 모집년도 기준, 사업포기 또는 지원중단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
-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 지원계획

- 지원금

구분	지원분야	지원비율	비고
1차년도 (역량 강화)	- 사업고도화(필수) - 해외판로개척 - 해외마케팅	총 사업비의 80% (기업 자부담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 2.8억원임</li> <li>• 각 지원기업은 각 년도별로 - 필수사업을 포함, 2개 지원분야 이상 5개 이하의 과제로 - 지원금 합계 2.5억원 이상 신청</li> <li>• 하나의 지원분야에 지원금 최대 2억원까지 신청가능함</li> </ul>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 사업고도화 - 해외판로개척(필수) - 해외마케팅		
3차년도 (글로벌 성장)	- 사업고도화 - 해외판로개척 - 해외마케팅		

※ 지원금 집행 가능한 세목: 인건비(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함),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복리후생비(국민연금 및 의료산재·고용보험의 사업자부담금만 가능),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고용부담금(일용직)

□ 지원사항

지원분야	프로그램	세부 지원사항
사업고도화	제품경쟁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제품 개발지원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기존 제품 개선) 자체 고유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신규 개발(브랜드, 상표, 디자인) 시가반 고부가가치 스포츠 시제품 개발 스포츠빅데이터기반 스포츠서비스 개발 등
	원가생산성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제조현장 개선, 생산효율화 체계구축 등) 조달/유통, 사내물류 시스템 개선(외주화, 부품조달 개선 등)
	영업마케팅	영업/마케팅 기획 및 실행, 국내 시연회 개최, 광고 콘텐츠제작 및 송출 (광고송출비는 3천만원 한도)
	IP	지식재산권(IP) 취득 및 관리 지원(국제특허 등), 시험인증 지원 <b>국내외 친환경인증 취득 및 관리 지원</b>
	경영전략	신규 사업 개발, 사업전환, 경영혁신 컨설팅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성장 및 발전전략) 컨설팅
	경영지원	조직·인사제도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노무관리 등 기업 정보화(IT) 체계 구축 및 설계, 재택근무 및 클라우드 업무환경 등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지원 기업 재무구조 개선(국내외 투자유치, IR, 기업공개 등 포함)
자금조달지원	M&A, 기업평가·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관련 컨설팅, 기업상장 지원(당해년도에 한함)	
해외판로개척	해외진출 전략	해외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경쟁사, 제품, 소비자 동향 조사/분석 포함) 해외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지원(진출계획 수립, 현지법률 지원)
	바이어 발굴	해외 바이어 및 사업파트너 발굴 및 연결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제외), 온라인전시회 ('22년1월 1일부터 참가한 전시회부터 적용) 해외 제품 시연회 및 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연회 등
	마케팅·홍보 활동 지원	제품 및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추진방안 수립 제품·기업의 홍보매체 개발 제작 및 홍보활동 지원 - 홍보매체: 영상물, 브로셔, 포장지, 전자·종이 카달로그 등 - 홍보활동: 현지 프로모션, TV, 신문, 잡지, SNS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PPL, 아트콜라보, 검색엔진 마케팅 등) 해외 바이어 DB 활용 표적 마케팅
수출 인프라구축	해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제작/구축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해외 현지 스토어, 온라인 종합쇼핑몰, 홈쇼핑, 오픈마켓 등)	

※ 각 프로그램의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지원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에서 각 '프로그램'의 '세부 지원 사항'에 해당하는 과제를 5개 이하로(필수과제 포함) 선정하고, 기업 직접 수행 또는 전문 수행사와 매칭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

□ 사업절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1. 12. 22(수) ~ '22. 1. 21.(금), 18:00까지

- 제출서류: 도약전략서 및 구비서류 1식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도약전략서 1부(홈페이지 공지) - 도약전략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 : 요건심사 적합기업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각 1부(재무제표 등) -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1년 기준)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각 1부 ○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제출 ○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약약서 각 1부
	* 추가자료(제출 가능 기업에 한함) ○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확인 증명서)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각종 인증(ISO,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타기술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인증서 등), 수상 이력 등 기술력·마케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정책부합도(가점): 문화체육관광부 수여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의 우수스포츠기업」 수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인증「장애인기업」, 여성가족부인증「가족친화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스포츠경영관리사(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고용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1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수료기업, 친환경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증빙자료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

- \* 신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상에서만 가능,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회원가입 및 접수등록 권장

## 5. 참여기업 선정

선정절차



선정평가

○ 평가방법: 계량평가(40점) + 비계량평가(60점) + 특별가점

※ 가점을 포함한 모든 평가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

① 계량평가(서면평가 + 가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서면평가 (40)	안정성(10)	○ 자기자본비율(최근 3개년 평균)
	수익성(10)	○ 총자산경상이익률(최근 3개년 평균)
	성장성(10)	○ 매출액 증가율(최근 3개년 평균)
	유동성(10)	○ 유동비율(최근 3개년 평균)
가산점 (최대 10점)	<최근 3개년 누적 수출액 실적: 최대7점>	
	- 500만\$ 이상	7
	- 300만\$ 이상-500만\$ 미만	6
	- 100만\$ 이상-300만\$ 미만	5
	- 50만\$ 이상-100만\$ 미만	4
	- 50만\$ 미만	3
<최근 결산년도 스포츠산업 매출액 비율: 최대3점>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점수	
- 60% 이상	3	
- 40% 이상-60% 미만	2	
- 20% 이상-40% 미만	1	
비고	- 매출액 및 수출액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기준임 - 서면평가 원점수와 가산점의 합은 계량평가 배점(4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 선정(동점순위 포함/10점 이상시), 비계량평가 시행

② 비계량평가(발표평가 + 가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발표평가 (60)	CEO비전 및 역량 (15)	○ 경영자의 스포츠산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 경영자의 사업 수행의지 ○ 경영자의 해외사업 수행 역량
	해외시장개척의지(15)	○ 해외 진출계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 ○ 해외 시장개척 내부역량 보유 ○ 수출 경험 및 사업추진 적격성
	고유역량 및 선도기업 도약 경영전략(15)	○ 스포츠 전문 인력 보유수준 ○ 스포츠산업 제품/서비스 혁신 전략 ○ 기업의 성장 잠재력
	선도기업 도약 목표설정 및 타당성(15)	○ 매출증대 목표 및 실현가능성 ○ 해외시장 진출 실현가능성 ○ 해외시장 네트워크 현황 및 향후 확대 가능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산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산점 기준: 정책부합도>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기업 -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수상기업	1
	- 중소기업창업부 인증 「여성기업」	1
	- 중소기업창업부 인증 「장애인기업」	1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1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1
	-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1
	- 「고용창출 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1
	- 스포츠경영관리사(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고용기업	1
	- 친환경 인증 기업(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①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인증기업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인증기업 ③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1
- 중소기업창업부 2021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수료기업	1	
비고	- 가산점 인증 서류는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발표평가 원점수와 가산점의 합은 비계량평가 배점(60점)을 초과하지 못함	

③ 특별가점: 코로나19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3점 차등부여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의 1-4분기 중 동일년도 2개 분기 이상의) 동 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감소율에 따라 가점 부여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매출 감소율 : 최대3점>	점수
- 매출 감소율 30% 이상	3
- 매출 감소율 20% 이상-30% 미만	2
- 매출 감소율 10% 이상-20% 미만	1

※ 특별가점을 포함한 모든 평가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

별지서식 양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pobiz.kspo.or.kr>)

선정결과: 개별통보(E-mail 및 유선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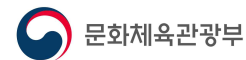
## 6.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

담당자: 이예원 과장(02-410-1546/ywlee@kspo.or.kr)

박수진 대리(02-410-1544/sjp@kspo.or.kr)

2021. 1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